

Hana 1Q bank CMS Global 이용계약서 개정대비표

1. 개정시행일 : 2017. 12. 11.

2. 개정내용

현행	개정	비고
<p>제11조(면책)</p> <p>“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객”이 계약을 위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본 계약”的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은행”이 통상적인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고의나 과실이 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경우 3.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4. “고객”的 착오 또는 오류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의 경우 5. 다른 “연계은행”的 인터넷 서비스 장애, 정지, 해지로 인한 거래불능의 경우 6. “서비스” 이용 PC 등에 등록한 인터넷 서비스 정보, 계좌관련 정보 등이 상이하거나 수정되어 거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7. “고객”的 이용자 PC등에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유출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p>제13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p> <p>① “고객”과 “은행”은 상호 합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하는 전자금융서비스의 추가 등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계약은 불임의 “신청서”에 변경 내용을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이 동의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하며, 동 “신청서”는 “본 계약”的 일부로 간주합니다.</p> <p>② “고객” 또는 “은행”은 상대방이 관계 법령 또는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은 언제든지 해지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	<p>제11조(면책)</p> <p>“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좌동) 2. <삭제> 2.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3. “고객”的 착오 또는 오류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의 경우 4. 다른 “연계은행”的 인터넷 서비스 장애, 정지, 해지로 인한 거래불능의 경우 5. “서비스” 이용 PC 등에 등록한 인터넷 서비스 정보, 계좌관련 정보 등이 상이하거나 수정되어 거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6. “고객”的 이용자 PC등에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유출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p>제13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p> <p>① (좌동)</p> <p>② “고객” 또는 “은행”은 상대방이 관계 법령 또는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은 언제든지 해지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	<p><u>금원의 약관변경권고</u> <u>사항변경</u> <증복문구식제> <문구변경></p> <p><호수제></p> <p>호수제에 따른 호체상</p> <p><항식제></p>